

「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
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
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5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민원봉사과장)

- 2010년 10월 29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최저 보유차고 면적이 완화됨에 따라,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-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확대
 - 개인택시, 용달화물차 ⇒ 개인택시, 용달화물차, 개별화물차 (1.5톤이하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1.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려는 것임.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하는 것으로 영세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